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김선민·장종태·조 국

김준형 · 정동영 · 이해민

차규근 • 황운하 • 박은정

신장식 · 서왕진 · 서미화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,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 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. 이후 차단 여부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

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 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. 그 결과,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.3일이 소요되고 있음.
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 ·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,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마약류 불법광고 등 모니터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.

- 1.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
- 2.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

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·삭제 등 대통령 이 명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2.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파단하는 경우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"을 "정보통신망"으로 한다.

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8 중 "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"을 "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4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- 2.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
제6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

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	제14조의2(마약류 불법광고 등
	모니터링)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 터링할 수 있다. 1.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행 위 2.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하여 「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

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수 있다.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・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

다.

- 1.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2.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4 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범죄의 발 생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

제28조(마약류의 소매) ① ~ ③ (생 략)

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
뢰하는 분	등 대통	령령으로	정하
는 조치를	를 할 수	있다.	

-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마약류의	소매)	1	~	3
(현행과 같음)				

4)	-
	-
	-
	-
<u>정보통신망</u>	-

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1. • 2. (생략)

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51조의8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

<신 설>

공무원으로 본다.

<신 설>
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u>.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51조의8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의제) <u>다음 각 호 중 어느 하</u>
나에 해당하는 사람
1. 제14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
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
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
무원이 아닌 사람
2.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
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
공무원이 아닌 사람
제69조(과태료) ①
<u>.</u>
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
	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
	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